

2023년 단체협약 합의서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서울의료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도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장 임금피크제도

-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이하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정 및 신규채용 인력 산출과 관련하여 아래 각목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정년연장형(의료직 외 전직종) : 만 57세에 달한 근로자 중, 월(月) 기본급이 당해 연도 법정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한 자(者)
 - 정년보장형(의료직) : 만 58세에 달한 근로자 중, 월(月) 기본급이 당해 연도 법정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한 자(者)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직능강화 및 경력재설계를 위한 교육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임금피크제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상시 협의체를 개설하고 논의를 지속한다.

제2장 휴가제도

- 장기재직휴가를 아래 각목과 같이 신설 및 확대 시행한다.

〈신설〉

가.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 5일(6년·7년·8년차 각 1일, 9년차 2일 사용)

〈확대〉

나. 10년차 이상 20년차 미만 : 15일(단, 2024년도 18년차 13일, 19년차 12일 사용)

다. 20년차 이상 30년차 미만 : 25일(단, 2024년도 28년차 23일, 29년차 22일 사용)

라. 30년차 이상 : 25일

마. 나목부터 라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既)사용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차감한다.

바.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한다.

5.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효율 진작을 위하여 개근휴가를 신설한다. 단, 개근휴가의 사용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6. 사가독서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한다. 단,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휴가별로 독후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자녀 돌봄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연 2일까지 유급으로 보장한다.

8.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따라 의료원 개원 기념 휴가를 폐지한다.

제3장 복리후생제도

9. 만 55세 이상 임직원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10. 직원식 만족도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직원식사 메뉴 이원화(샐러드식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1. 임직원 피복지급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비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제4장 기타

12. 업무 효율화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13. 의료의 공공성 실현 및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위하여 적정인력 및 정원 확보를 노력한다.
14.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각목의 내용을 별도로 합의한다.
 - 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운영
 - 나. 노동조합 편의제공(노동조합 사무실 포함)
 - 다. 그 외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필요사항
15. 본 합의를 반영하여 서울의료원 단체협약서 전문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휴가제도 시행) 본 합의서 제2장 휴가제도는 제반 행정사항의 정비 후 시행한다. 단 제8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경과조치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복리후생제도 시행) 본 합의서 제3장 복리후생제도는 예산 및 관할 부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始期)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3조(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 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간주한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이 현 석

이 현 석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심 현 정

심 현 정